

## 현장실습지원센터운영규정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현장실습지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장실습지원 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용어의 정의)** “현장실습”이란 학생들이 재학 중 일정기간동안 국내·외 기업, 관공서,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을 통하여 사회를 이해하고 전문지식을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졸업 전 경력개발과 .졸업 후 자기진로설정 및 취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활동을 말한다.

**제3조(업무)**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현장실습 에 관한 계획 수립(개정 2019.02.21.)
2.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(개정 2019.02.21.)
3. 현장실습의 운영·지원 및 조정, 관리
4. 현장실습 교과목 운영 및 신규 개발
5.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실습기관 섭외 등 대외 연계 및 협력 체계 확립
6.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교내 학과, 전공 및 관련 부서와의 협력
7. 기타 본 센터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

### 제2장 조 직

**제4조(센터장)** ①센터는 취업진로처 내에 두며, 취업진로처장이 겸직하거나, 센

#### 4-1-34~2 제4편 부속기관

터장을 따로 둘 수 있다.(개정 2019.02.21.)

②센터장은 부교수 이상 전임교수 또는 4급 이상의 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③센터장은 센터의 제반업무를 수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**(직원 및 조교) ①현장실습 지원과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직원을 두며, 필요에 따라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②직원은 업무의 원활성을 위해 취업진로처 직원이 겸직할 수 있다.(개정 2019.02.21.)

### 제3장 운영위원회

**제6조**(구성) ①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.

④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임명직 위원으로 구성되며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이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1. 당연직 위원 : 센터장, 취업진로처장, 취업지원팀장

2. 임명직 위원 : 센터장이 위촉한 교원, 현장실습 기관 임직원 등

**제7조**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①센터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
②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사항

③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사항

④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⑤센터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

⑥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**제8조**(회의)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위원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기 타

**제9조**(규정의 개정) 본 규정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제규정관리 규정에 따라 개정한다.

**제10조**(준용) 본 규정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규 및 본 대학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**제11조**(운영세칙) 본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0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